

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	법 제21조 제1항	300	600	1,000
나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1호	100	200	300
다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2호	100	200	300
라.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·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3호	100	200	300
마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4호	100	200	300

바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5호	300
사.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 제2항제6호	300